

창업지원센터 운영규정

2025. 12. 01. 최초제정

2026. 09. 07.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앵커사업단 운영규정에 의거 앵커사업단에 소속된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업생태계 조성 및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09.0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라 함은 AI, 보건, 의료 및 미래 신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창업·사업화 지원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6.09.07.>
2. “지원 프로그램”이라 함은 창업 교육, 멘토링, 기술지원, 장비·공간 제공, 사업화 지원 등 센터가 제공하는 모든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사업 및 업무) 본 센터는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유업무 관련 외부기관 협력 및 대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조직구성) ① 센터의 조직은 센터장과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 업무 전반을 통할한다.

③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회는 대학 구성원으로 교직원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앵커사업단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6.09.07.>
2.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앵커사업단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09.07.>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다.

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결산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 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센터의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제반 사업운영의 자문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제9조(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전체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재정

제10조(재정)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2. 기타지원금

제11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으로부터 회계연도에 관한 규정이 정해진 사업의 경우 지원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센터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재정지원의 상위기관, 관련법령 및 대학의 제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09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시행된 센터 관련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